



# 시 보

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.

[www.namwon.go.kr](http://www.namwon.go.kr)

제36호 2022. 5. 6(금)

|                |  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|
| <b>선<br/>람</b> | 기관의 장 |
|                |       |

## 공 고

- 남원시공고 제2022-1039호 남원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----- 1
- 남원시공고 제2022-1058호 남원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----- 16
- 남원시공고 제2022-1085호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----- 21

|      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
|------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
| 회<br>람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
|------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

남원시공고 제1039호

『남원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』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『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』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5월 3일

남 원 시 장

## 남원시 국어 진흥 조례 제정안

### 1. 제정이유

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문화원의 지원·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, 정의, 책무 규정 (안 제1조~제3조)
- 나. 문화원의 시설, 시설지원,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4조~제6조)
- 다. 문화원의 지원 범위 및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7조~제10조)
- 라. 사업의 위탁,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11조~12조)

**3. 입법예고기간** : 2022. 5. 3. ~ 2022. 5. 23. (20일간)

**4. 의견제출**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·개인은 2022년 5월 23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(참조:문화예술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*가. 의견 제출 사항**

- 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)
- 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**나. 의견 제출할 곳**

: 우 55770 / 남원시 시청로 60, 문화예술과

**다. 의견 제출 방법**

: 서면, 이메일(nixie37@korea.kr), fax(063-620-6707) 및 직접방문 등

**5. 기타사항**

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문화예술과 문화예술담당(☎063-620-6152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**6. 붙임** : 남원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. 1부

# 남원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

|          |  |
|----------|--|
| 의안<br>번호 |  |
|----------|--|

제출연월일: 2022. 5. .  
 제출자: 남원시장  
 제안설명자: 문화예술과장

## 1. 제정이유

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 제3조제1항, 제19조에 따라 남원문화원의 지원·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, 정의,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1조~제3조)
- 나. 문화원의 시설, 시설지원,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4조~제6조)
- 다. 문화원의 지원 범위 및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7조~제10조)
- 라. 사업의 위탁,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11조~12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
- 나. 그 밖의 사항
  - 1) 입법예고
    - 기 간: 2022. 5. 3. ~ 2022. 5. 23. (20일간)
    - 결 과:
  - 2) 비용추계서: 붙임
  - 3) 규제예비심사: 비 심사대상
  - 4) 성별영향분석평가: 완료

남원시 조례 제 호

## 남원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남원문화원의 지원·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남원문화원”(이하 “문화원”라 한다)이란 남원시의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원을 말한다.
2. “사업보조금”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.
3. “운영보조금”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.

제3조(책무) ① 남원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법 제3조에 따라 시장은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·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- ② 남원문화원장(이하 “문화원장”이라 한다)은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시설) 문화원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.

1. 향토사료 보관, 전시 및 연구시설
2. 교육 운영시설 및 기본시설

3. 업무시설 및 지원시설
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

제5조(시설지원) ① 법 제15조에 따라 시장은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(無償)으로 대여할 수 있다.

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공유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.

제6조(시설의 이용 제공 및 제한) ① 법 제6조에 따라 문화원은 그 목적 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을 지역주민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.

② 문화원장은 시설의 이용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- 1.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
- 2. 시설의 유지·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
- 3. 정치 및 종교 활동이나 특정 제품의 선전·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할 경우
- 4. 그 밖에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

제7조(보조금의 지원 범위) 법 제15조에 따라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, 그 지원범위는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.

제8조(사업보조금의 용도)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려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.

- 1. 지역문화의 계발·보존 및 활용

2. 지역문화(향토자료를 포함한다)의 발굴·수집·조사·연구 및 활용
3.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
4.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
5.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
6. 「문화예술교육 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
7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
8.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

제9조(운영보조금의 용도) 운영보조금은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.

1.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일상경비
2. 문화원 시설의 유지관리비 및 시설의 임차비
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

제10조(지도 및 감독) ① 시장은 지원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의 관계서류 장부, 기타 참고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,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정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검사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
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.

제11조(사업의 위탁·대행) 시장은 문화원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문화시설 운영 및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으며,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2조(준용)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, 「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」, 「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」, 「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13조(시행규칙 등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등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



## 붙임 관련 법규

### ■ 지방문화원진흥법

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·육성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육성·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 <신설 2011. 7. 21., 2020. 6. 9.>

③ 지방문화원은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7. 21.>

제6조(시설) ① 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·도 조례로 정하는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 <개정 2020. 2. 18.>

② 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시설 중 일부를 지역주민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.

제8조(지방문화원의 사업) ① 지방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.

1. 지역문화의 계발·보존 및 활용
2. 지역문화(향토자료를 포함한다)의 발굴·수집·조사·연구 및 활용
3.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
4.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
5.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
6. 「문화예술교육 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
7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
8.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

② 지방문화원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문화원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

제15조(경비의 보조 등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,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(無償)으로 대여할 수 있다.

제19조(조례의 제정)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·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## 남원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

### 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1. 재정수반요인
  - ① 남원문화원 지원·육성 의무
  - ② 남원문화원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
2. 관련조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남원문화원의 지원·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책무) ① 남원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법 제3조에 따라 시장은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·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7조(보조금의 지원 범위) 법 제15조에 따라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, 그 지원범위는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.

### 2. 비용 추계결과

1. 비용추계의 전제
  - ① 운영인력 인건비 반영(직원3명, 학예사1~3명)
    - 학예사 인건비는 공모사업비(2022년 지역문화인력지원사업) 기준액 반영
    - ※ 공모지원액 : 34백만원(국비 22 / 시비12)
  - ② 문화원 공공체제, 일반 수용비 등 일반 운영비 반영
  - ③ 남원 문화원 육성을 위한 사업비 반영

#### 2. 비용추계의 결과

- 인건비 상승률(2%) 및 인력 확충(2026년까지 추가3명), 물가 상승률(1.5%) 등 고려
  - 공모사업확정(국가직접지원)으로 2023년까지 학예사 1명 인건비(국비, 시비) 지원 가능하나, 2024년부터 전액시비로 편성해야하며 2024~2025년 학예사 2명, 2026년 학예사 3명 필요 (※ 문화원의 학예기능 강화 필요에 따른 인건비 상향 불가피)
  - 학예기능 강화 시 전문적이고 보다 다양한 분야의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사업비 증액 필요
  - 연도별 비용 예상 추계표 (단위 : 연도/백만원)

| 구 분        | 2022년도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| 2023년도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| 2024년도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| 2025년도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| 2026년도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
|            | 합계         | 국비        | 도비        | 시비         | 합계         | 국비        | 도비        | 시비         | 합계         | 국비       | 도비        | 시비         | 합계         | 국비       | 도비        | 시비         | 합계         | 국비       | 도비        | 시비         |
| <b>합 계</b> | <b>236</b> | <b>22</b> | <b>22</b> | <b>192</b> | <b>248</b> | <b>22</b> | <b>22</b> | <b>204</b> | <b>297</b> | <b>0</b> | <b>22</b> | <b>275</b> | <b>313</b> | <b>0</b> | <b>22</b> | <b>291</b> | <b>369</b> | <b>0</b> | <b>22</b> | <b>347</b> |
| 운영비        | 147        | 22        |           | 125        | 150        | 22        |           | 128        | 188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188        | 191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191        | 232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232        |
| 사업비        | 89         |           | 22        | 67         | 98         |           | 22        | 76         | 109        |          | 22        | 87         | 122        |          | 22        | 100        | 137        |          | 22        | 115        |

### 3. 재원 조달 방안

1. 재원조달계획(주재원은 시비)
  - 운영 관련 : 시비보조금, 국가공모사업신청에 따른 직접지원
  - 사업비 관련 : 시비보조금, 도비보조 및 공모사업 신청

### 4. 그 밖의 사항

1. 부대의견 : 없음
2. 협의사항 : 없음
3. 참여자 및 작성자 : 남원시 문화예술과 문화예술담당보조 하은숙

### 〈연도별 비용 추계표〉

(단위 : 백만원)

| 구 분                 |       | 1차년도<br>(2022년) | 2차년도<br>(2023년) | 3차년도<br>(2024년) | 4차년도<br>(2025년) | 5차년도<br>(2026년) | 계  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|
| 세 입                 |       | 44              | 44              | 22              | 22              | 22              | 154   |
| 국비                  |       | 22              | 22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44    |
| 도비                  |       | 22              | 22              | 22              | 22              | 22              | 110   |
| 세 출                 |       | 236             | 248             | 297             | 313             | 369             | 1,463 |
| 국비                  |       | 22              | 22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44    |
| 도비                  |       | 22              | 22              | 22              | 22              | 22              | 110   |
| 시비                  |       | 192             | 204             | 275             | 291             | 347             | 1,309 |
| 재원 조달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|
| 의존<br>재원            | 소 계   | 22              | 22              | 22              | 22              | 22              | 110   |
|                     | 보조금   | 22              | 22              | 22              | 22              | 22              | 110   |
|                     | 지방교부세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|
| 자체<br>수입            | 소 계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지방세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세외수입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|
| 지방채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|
| 기 금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|
|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|
| 기 타<br>(채무부담, 민자 등) |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|

## 규제영향분석서

### I.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

| 1. 규제사무명                       | 남원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 | 2. 구 분 |  |    |  | 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|--|----|--|----------------|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신설     | ○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강화 |  | 존속<br>기한<br>연장 |  |
| 3. 소관부서명<br>및 작성자<br>인적사항      | 자치행정국 문화예술과<br>국 장 : 지방서기관 이영근<br>담 당 : 지방행정주사 정미옥   |        | 과 장 : 지방행정사무관 박승용<br>작성자 : 지방행정주사보 하은숙 |    |  |                |  |
| 4. 근거법령 등                      | 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 제6조   |        |  |    |  |                |  |
| 5. 피규제자 및<br>이해관계자 등           | 문화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   |        |  |    |  |                |  |
| 6. 규제 존속기한                     | 「남원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」 폐지 시까지  |        |  |    |  |                |  |
| 7. 종전 규제 및<br>신설(강화)<br>규제의 내용 | <p>《신설규제》</p> <p>○ 제6조(시설의 이용 제공 및 제한)</p> <p>② 문화원장은 시설의 이용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</p> <p>1.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</p> <p>2. 시설의 유지·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</p> <p>3. 정치 및 종교 활동이나 특정 제품의 선전·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할 경우</p> <p>4. 그 밖에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</p> |        |  |    |  |                |  |

## II. 평가요소별 규제 영향분석

### 1.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

가. 문제의 정의(배경과 원인)

-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문화원 시설 중 일부를 지역주민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
- 시설을 개인적, 정치적, 종교적 등으로 이용할 경우 공동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음.

나. 규제의 신설·강화 필요성

- 문화원의 본래의 목적인 지역문화진흥이라는 공공성을 침해하지 않고, 주민들에게 공동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에 시설 이용 제한 사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.

### 2.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

가.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

- 해당없음

나. 규제의 실현가능성

- 조례 제정으로 실현가능

### 3.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

가. 기존규제로 대체 가능 여부 : 해당없음

나. 규제외 다른 방법으로의 목적달성 가능여부 : 해당없음

다. 유사한 기존규제와 중복여부 : 해당없음

### 4.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

가. 규제의 비용분석

- 해당없음(별도의 행정비용 미발생)

나. 규제의 편익분석

- 부정한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시설의 본래 목적성 훼손 방지
- 시설의 이용 제한 사유를 명확히 함으로써 예측가능성에 따른 불필요한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, 행정의 신뢰성 증진이 가능함.

### 5.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

가. 시장경쟁 제한요소 포함여부 : 해당없음

나. 기업활동 저해요소 포함여부 : 해당없음

6.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

- 시설의 이용조항과 관련하여 추후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사항에 조항을 명시함으로서 객관성과 명확성 확보 가능
- 타 시도 사례 : 과천시, 고양시 조례 등 사용허가 취소 조항 명시

7. 행정기구·인력 및 예산의 소요

- 해당없음

8.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·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

- 해당없음

# 의견제출서

|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. 의견제출 목록 |        | 남원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(안)에 대한 의견 |
| 2. 제출자     | 성명(명칭)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| 주 소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. 의 견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. 기 타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(의견제출 및 처리)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22년 월 일

의견서 제출인 주 소 :  
 성 명 : (서명 또는 인)  
 전 화 :

## 남원시장 귀하

|     |   |
|-----|---|
| 비 고 | 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.<br>2.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<br>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
|-----|---|



남원시공고 제2022-1058호

『남원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』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『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』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5월 02일

남 원 시 장

## 남원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

### 1. 폐지이유

- 「남원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」는 남원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(2005.02.14.) 운영하였음.
- 남원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매각(2022. 4.15.)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「남원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」 폐지

3. 입법예고기간 : 2022. 5. 02. ~ 2022. 5. 22. (20일간)

#### 4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·개인은 2022년 5월 22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(참조:원예산업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# 가. 의견 제출 사항

- 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)
- 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##### 나. 의견 제출할 곳

: 우 55770 / 남원시 시청로 60, 원예산업과

##### 다. 의견 제출 방법

: 서면, 이메일(jumpkoj@korea.kr), fax(063-620-6745) 및 직접방문 등

#### 5. 기타사항

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원예산업과 농산물유통담당(☎063-620-6247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## 6. 붙임 : 남원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1부

# 남원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

|          |  |
|----------|--|
| 의안<br>번호 |  |
|----------|--|

제출연월일: 2022. 4. .  
제 출 자: 남 원 시 장  
제안설명자: 원 예 산 업 과장

## 1. 폐지이유

- 「남원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」는 남원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(2005.02.14.) 하였으나, 남원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매각(2022. 4.15.)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「남원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」 폐지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

나. 그 밖의 사항

- 1) 입법예고
  - 기 간: 2022. 5. . ~ 5. .(20일간)
  - 결 과:
- 2) 비용추계서: 해당없음
- 3) 규제예비심사: 해당없음
- 4) 성별영향분석평가: 해당없음

남원시 조례 제 호

남원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

남원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의견제출서

|            |        |  |
|------------|--------|--|
| 1. 의견제출 목록 |        |  |
| 2. 제출자     | 성명(명칭) |  |
|            | 주 소    |  |
| 3. 의 견     |        |  |
| 4. 기 타     |        |  |

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(의견제출 및 처리)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22년 월 일

의견서 제출인 주 소 :  
 성 명 : (서명 또는 인)  
 전 화 :

## 남원시장 귀하

|     |   |
|-----|---|
| 비 고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.</li> <li>2.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</li> <li>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li> </ol> |
|-----|---|

**남원시 공고 제2022 - 1085호**

『남원시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』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『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』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5월 4일

**남 원 시 장****『남원시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』  
일부개정조례안****1. 개정이유**

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의 ‘사용료의 반환’ 기간을 명확히 하고, 확충된 시설현황을 별표에 반영하여 공공체육시설 효율적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함.

**2. 주요내용**

가. 사용료의 반환 기준일 규정(안 제13조제4항)

- 체육시설: 반환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
- 부대시설: 반환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

나. 체육시설의 현황 및 사용료 등 변경사항 반영(별표 1, 2, 3)

**3. 입법예고기간** : 2022. 5. 4. ~ 2022. 5. 24. (20일간)

#### 4. 의견제출

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, 개인은 2022년 5월 24일 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(참조:교육체육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# 가. 의견 제출 사항

- 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)
- 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##### 나. 의견 제출할 곳

: 우 55738 / 남원시 시청로 60, 남원시청 교육체육과

##### 다. 의견 제출 방법

: 서면, 이메일(kangjy1217@korea.kr), fax(063-620-6708) 및 직접방문 등

#### 5. 기타사항

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교육체육과 체육시설팀(☎063-620-5610)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6. 붙임 : 『남원시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』 일부개정조례안

#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         |  |
|----------|--|
| 의안<br>번호 |  |
|----------|--|

제출연월일: 2022. 5.  
제 출 자: 남 원 시 장  
제안설명자: 교육체육과장

## 1. 개정이유

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의 ‘사용료의 반환’ 기간을 명확히 하고, 확충된 시설현황을 별표에 반영하여 공공체육시설 효율적 운영에 이바지 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사용료의 반환 기준일 규정(안 제13조제4항)

- 체육시설: 반환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
- 부대시설: 반환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

나. 체육시설의 현황 및 사용료 등 변경사항 반영(별표 1, 2, 3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

나. 그 밖의 사항

- 1) 입법예고
  - 기 간: 2022. 5. . ~ 2022. 5. .(20일간)
  - 결 과:
- 2) 비용추계서: 비 추계대상
- 3) 규제예비심사: 비 심사대상
- 4) 성별영향분석평가: 완료



남원시 조례 제 호

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시장은 제1항, 제2항에 따라 사용료 반환 결정을 할 때 각 호의 사항을 지켜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예외로 한다.

1. 체육시설: 반환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

2. 부대시설: 반환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

별표 1, 별표 2,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의견제출서

|  |   |  |
|--|---|--|
| 1. 의견제출 목록   |   |  |
| 2. 제출자   | 성명(명칭)  |  |
|  | 주 소   |  |
| 3. 의 견   |   |  |
| 4. 기 타   |   |  |
| <p>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(의견제출 및 처리)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22년    월    일</p> <p>의견서 제출인 주 소 :<br/> 성 명 : (서명 또는 인)<br/> 전 화 :</p> <p><b>남원시장 귀하</b></p> |   |  |
| 비 고  | 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.<br>2.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<br>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  |